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사업연도를 말한다"를 "사업연도(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목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재무제표"로 한다.

제14조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제5호가목 중 "부과"를 "부과(단, 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로 한다.

3.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 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전문성 없이 회계감 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 독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제5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특성상 요구되는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산업전문성 등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별표 1 제4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감사팀의 산업전문성

별표 3 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력기간	경력기간	경력기간	경력기간
40년 이상	30년 이상	20년 이상	15년 이상
100	110	120	115
경력기간	경력기간	경력기간	경력기간
10년 이상	6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10	105	100	80

별표 3 제2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증권선물위원회에"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상위 15% 이내인 경우 : 10%(단, 100점 환산 시 85점 미만인 경우 5%)
- 2) 상위 15% 초과 30% 이내인 경우 : 5%(단, 100점 환산 시 80점 미만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

별표 4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1)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감사인은 동일한 회계법인으로 정한다. 다만,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 2)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정감사인 과 같은 감사인을 지정받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회계법인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감사인 지정대상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 발생에 따라 2023년 10월 1일 이후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2023년 10월 1일 이전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로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회사의 지정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0조의 감사인 지정기간 중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지정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제3조(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의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9항제5호가목 단서, 제1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 인의 감사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의 경우 제10조의 감사인 지정 기간 동안은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9항제5호가목 단서, 제1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감사인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성과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 제5조(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산정기준일부터 적용하고, 별표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품질관리수준 계량지표 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혅 행 개 정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3 (2) ----개 사업연도"라 직전 사업연도를 포 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를 말한다. ----- 사업연도(법 제11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로 감사인 관한 법률 시행령 _ 제6조제4항제14 을 지정받은 회사의 경우 해당 사유 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에 따른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된 회사의 경 업연도부터 기산한다)를 말한다. --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항 목은 합병 전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영 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및 이자보상 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 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 업이익은 이자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한다]은 회사가 법 제23조제3항 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哥-----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④ ~ ⑦ 삭 제
- (8)·(9) (생 략)
-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 ⑦ (생 략)
 - ⑧ 영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 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를 말한다.
 - 1. · 2. (생략)

<신 설>

- ⑨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있다.
- 1. ~ 4. (생략)
- 5. 영 제16조제2항제5호(금융감독원 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 중 필요한 조치를 부과

⑧・⑨ (현행과 같음)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8
<u>.</u>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전문성
없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9
1. ~ 4. (현행과 같음)
5

가. 지정제외점수 90점을 부과

나.·다. (생 략)

① (생략)

- 제15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 ④ ㅈ (생 략)
 - ⑤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 설>

<u>8</u>. (생 략)

⑥ ~ ⑨ (생 략)

가 <u>부과(단,</u>
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
나.•다.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5
1. ~ 7. (현행과 같음)
8.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
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
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
우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